



REACH 제도 개요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The scheme of REACH and it's effect

김 종 윤 /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전문위원

REACH 제도는 기존의 화학물질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상대적으로 위해성 관련 정보가 취약한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해성 자료를 보완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Registration) 및 평가(Evaluation)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성 등의 물질은 별도의 허가(Authorisation) 또는 제한(Restriction) 등의 조치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대체물질의 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와와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 책무가 과거 정부 주도에서 EU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과거에 신규화학물질에만 적용되었던 의무가 REACH하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은 물론 기존화학물질과 완제품(자동차, 전자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역외(域外) 수출자의 경우는 수입자를 통하거나 별도로 선임한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통해서만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화학물질관리가

물질자체의 독성에 대한 관리 즉 유해성(Hazard)에 대한 관리체계라면, REACH하에서는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어 미치는 영향(발암성 등 최대 60여개 분야)을 고려한 전 과정 평가개념인 위해성(Risk) 관리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등록시 요구하는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ical Safety Report; CSR)는 화학물질의 독성뿐만 아니라, 유통·사용과정에서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저감대책까지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생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정보전달 체계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제조·수입업체는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 하위 공급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REACH에서는 “1개 물질 1회 등록(OSOR: One Substance One Registration)” 원칙에 따라 기업비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간에는 컨소시엄(협의체 개념)을 구성, 공동등록토록 규정하고 있다.

REACH가 발효되면 EU 내 화학물질 및 완제품(화학물질 함유)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표 1] REACH 도입에 따른 변화

구분	기존	REACH 제도	비고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 EU내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3만여종) · 완제품내의 함유된 화학물질	· 1톤/년 이상
등록 의무자	정부	· EU내 제조·수입업체	· 국내 기업은 수입자나 대리인 통해 등록
등록내용	유해성 정보	·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발암성 등 최대 60여개)	· GLP기관 생산자료
등록방법	개별 등록	· EU 컨소시움 통한 공동등록	

정해진 기한 내 사전등록 및 본등록을 수행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2008.6.1~11.30, 6개월)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등록시 유예혜택(3.5~11년 등록기한 연장)을 받을 수 없어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 해짐에도 불구하고, 우선 REACH의 복잡 방대한 법체계(849쪽)와 세부이행지침서(RIPs)의 미확정 등으로 사전등록 및 본등록 시 산업계가 이행해야 할 법규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사전등록 후 본등록을 위한 자료생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험비용, 유해성 자료생산을 위한 국내 시험기관 등 인프라 부족, EU내 수입자 혹은 대리인을 통해 등록함에 따른 기업정보의 유출 가능성,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정보공유 및 대응에의 어려움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우 독자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U(EC JRC)에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물질당 0.16~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REACH 대응 소요비용도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영국의 경우 약 0.93조원(영국 환경부)을 예상 일본의 경우는 약 7.8조원(니케이신문 '07.1)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등록비용 및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소요비용 분석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외국의 유사한 분석 자료를 기초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더불어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전문가 및 시험기관(GLP)의 부족으로 상당부분의 자료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원가상승(5~10%) 및 대체물질 개발비용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수출포기, 폐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환경부·중소기업청 합동 전국 순회세미나('07.1.22~26)에서 다수의 국내기업이 수출 포기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영국의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1/3이 등록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REACH에서는 유해한 화학물질(발암물질, 난분해성 물질 등)에 대해 별도로 목록화하여 EU내 수입·사용을 금지하거나 대체물질 개발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므로 기술, 인력, 정보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다가올 주요 수출국의 유사제도 도입까지 맞물려 있어 REACH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적인 무역장벽에 고립되는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¹⁰⁾